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80th May 2015

- ▶ WHERE IS GRACE CHANG?:
FINDING A NEW NORMAL2
- ▶ ABOUT WRITERS2
- ▶ COVER STORY: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할랄3
- ▶ FTA NEWS:
발효를 앞둔 한-콜롬비아 FTA 수출입전망5
- ▶ VOICES FROM THE FIELDS:
5월, 봄처럼 행복하세요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9
- ▶ CUSTOMS PRECEDENT @11
- ▶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美 무역대표부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13
- ▶ 특별 기고
신한관세법인 창립 50주년에 붙여.15



[신한관세법인]

2015.04.21

수출촉진을 위한 보세공장 과세제도 간담회 개최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Finding a New Normal



장승희

대표 관세사

지난 3 월 중국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신상타이(新常态)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30 년간 지속되어 왔던 중국의 고속성장시대가 끝났음은 지난 12 월의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공식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상상태'를 뜻하는 신상타이(新常态)는 2008 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을 표현한 New Normal 과 같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3 저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으니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식 New Normal 입니다.* 한편 중국정부의 신상타이(新常态)는 성장률을 7%대로 낮춘 새로운 도전이나 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바꾸었다는 개념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성장목표와 개혁 등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Roger McNamee 는 저서인 『The New Normal』에서 technology 의 혁신으로 어제의 세계가 내일의 세계로 급속히 바뀌고 있어 새로운 기준이 지배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확대되는 세계화 시대에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경제의 진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의 건강 및 생산성은 향상되고 정부나 대기업에 한정되던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정부·기업 및 개인의 globalization 을 위한 기사들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아직은 생소한 할랄 인증에 대한 기사와 한-콜롬비아 FTA 전망 및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무역동향이 있습니다. **헨펠 A/S 그룹 이정민 이사의 '5 월, 봄처럼 행복하세요.'**도 New Normal 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며 찾아낸 새로운 기준들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중요성. 무엇보다 성차별, 갑을차별, 상하차별이 없어지는 선진사회의 New Normal 을 지금 기대합니다.

18 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보다 10 배 이상 빠르게, 300 배 이상 광범위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super computer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및 모든 영역에서 New Normal 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사를 붙잡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신속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미국의 뉴노멀과 중국의 신상타이 April, 2015, 중앙일보 김중수 논설위원
 ** 'The four global forces breaking all the trends' April, 2015, McKinsey&Company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할랄

FTA News-
 발효를 앞둔 한-콜롬비아
 FTA 수출입전망

Voices From The Fields-
 5 월, 봄처럼 행복
 하세요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Customs Precedent @
 수입항에서 발생한 CIS
 비용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美
 무역대표부 '2015 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이 동 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최 성 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이 정 민 이사
DEBB@hempel.com



유 입 세 관세사
isvoo@customsservice.co.kr



권 선 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김 효 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자문

PROFILE
 - 헨펠 A/S, 그룹 마케팅
 서울, 그룹 MCO (다국적
 코디네이터)
 - 북유럽 문화 연구소, 창립
 파트너
 - YWCA 서울, 홍보 및
 출판의 위원
 - 저자 '오픈 샌드위치,
 북유럽식 행복 레시피'
 - 前 EUCK Director (이사)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통관 및 환급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5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前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Cover
 Story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할랄

1. 개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할랄(Halal)'이 식품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하다"는 뜻으로 식품뿐 아니라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할랄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금지사항(알코올, 콜레스테롤, 돼지고기 등)을 준수한 상태에서 먹고, 자고 쓰는 것이 생산되었는가를 검증하여 식품산업, 의약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 적용되는 이슬람권의 필수 인증이며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2. 할랄인증이 주목받는 이유

(1) 거대한 시장규모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인구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의 25%에 달하는 16 억 명에 달하며 2030년까지 5 억 명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랄식품 시장은 1 조 880 억 달러(2012년)에서 향후 2018년에는 1 조 6,260 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할랄의 인증 범위는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몸에 바르고 섭취하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할랄식품의 시장규모

[출처 : 한겨레신문, 2015.04.12]

(2)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

할랄은 이슬람의 개념이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도 크다. 이슬람 율법에 따른 성분 및 제조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증 과정에서 제품의 원재료, 생산 공정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의 한 식품업체는 할랄인증을 위해 원재료의 생산 및 운송은 물론 공장의 주변도 관리해 이슬람 율법에서 금한 개나 고양이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인증 과정이 까다로운 할랄식품의 특성 상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슬림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3. 할랄인증의 문제점

할랄인증기관은 세계적으로 300 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이슬람종교단체가 인증을 진행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주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증기준이나 요건이 각 인증기관 별로



<그림 2> 다양한 할랄인증 마크

[출처 : BUSINESS WATCH, 2014.12.29]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외와의 상호교차인증도 향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해외와의 교차인증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어렵게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 인증 효력을 동등하게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내의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인증마크가 동남아 등 현지에서 인지도가 낮은 탓에 국내 업체의 할랄식품 수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 식품업체의 대응방안

할랄인증의 경우 인증의 과정은 까다롭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한국식품에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무슬림이 아닌 이상 굳이 할랄식품을 섭취하는 등 할랄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정착해가는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기회에까지 눈을 감는다면 세계 시장의 흐름에 뒤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할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발효를 앞둔 한-콜롬비아 FTA 수출입전망

1. 개요

2013년 2월,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간 정식 서명이 완료된 후 지지부진했던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콜롬비아 측은 2014년 12월에 의회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 승인 대기 중이다. 콜롬비아 의회(상원-하원)를 통과하면 양국 간 합의를 통해 발효 일자를 결정하면 사실상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

현재 콜롬비아는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과의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콜롬비아 FTA 수출 유망품목

순번	HS CODE	품목명	2014년	
			수출금액(천불)	수출증감률(%)
		총계	1,509,399	12.4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242,997	10.0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98,560	5.4
3	870899	기타	117,494	7.6
4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5,130	0.9
5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66,269	16.3

<표> '14년 콜롬비아 수출실적 상위 5품목

[출처: KITA 무역통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4년 기준전체 對콜롬비아 수출액의 25.8% 차지)의 경우 현재 35% 부과되었던 관세가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자동차 산업 분야 선진국인 미국, EU 와 각각 2012 년, 2013 년에 순차적으로 FTA 를 체결하였고, 한-콜롬비아 FTA 의 조속한 발효로 인하여 콜롬비아 자동차 시장 內 미국, EU 와 점유율 선점 경쟁이 한층 가열된 전망이다.

주요국의 콜롬비아 승용차 관세

(단위 : %)						
국가	'11	'12	'13	'14	'15	철폐 시점
멕시코	0	0	0	0	0	2007
한국	35	35	35	35	35	FTA 발효후 10년
일본	35	35	35	35	35	FTA 미체결
미국	35	31.5	28	24.5	21	2021
독일	35	35	30.6	26.3	21.9	2022

자료 : 콜롬비아 관세청

또한 타이어, 철강제품 등은 5 년 이내에 균등 철폐 되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어 수입점유율의 판도를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 콜롬비아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순위	국가	'10	'11	'12	'13	'14
1	중국*	25.8	28.4	27.6	21.0	21.4
2	일본*	16.4	15.5	19.6	21.3	17.8
3	브라질	11.5	10.3	10.6	10.0	12.8
4	한국	5.1	6.0	5.8	8.7	11.2
5	태국*	2.1	1.8	2.4	3.8	5.8

주 : *는 콜롬비아와의 FTA 미체결 국가
자료 : Global Trade Atlas

'14 년 수출실적 상위 1,2 위인 자동차의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역내가치포함 비율 직접법 35% or 공제법 45% or 순원가법 35% 이상)이며, 기타의 자동차 부분품은 세번변경기준

(CTH)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이상)의 선택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판정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에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3. 한-콜롬비아 FTA 주요 수입품목

한국은 발효 년도 5 년 이내 수입액 기준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일부 농산물 151 품목을 양허제외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설정함으로써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콜롬비아는 감자, 화훼, 설탕, 커피 등 주력 수출품목인 농산물 이외에도 현재 세계 5 대 석탄 수출국이며 이외에도 동,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을 수출하고 있어 원활한 광물자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인하여 콜롬비아 내 최대 산업인 석유, 광산업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 차 광물산업 투자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4. 결론

콜롬비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최상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FTA 체결을 통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 투자 시 양국의 원활한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현재 콜롬비아는 일본과 2012 년에 협상을 개시한 후 9 차례 협상까지 개최하였고, 중국과도 협상을 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동북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콜롬비아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한-콜롬비아 FTA 가 신속히 발효되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5월, 봄처럼 행복하세요

지난 싱가포르 출장은 공교롭게도 리관유 전 총리의 서거와 국장이 있었던 바로 그 때였다. 사람들은 검정 옷을 입기로 모두 약속을 한 듯 무채색이 거리를 도배했고, 그 위에 비마져 추적 추적 내리고 있어 온 나라가 더욱 숙연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그건 나에게 있어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비스듬히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여전히 비즈니스 미팅은 이루어졌지만 미팅에서나, 식사 시간에서나,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실제로 싱가포르 시민들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 오래 오래 대화 속에서 사라질 줄을 몰랐는데, 외부인인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한 가지는 그의 부인인 추여사가 그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며 그의 모든 결정의 뒤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디에서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었고, 생소하기만 했는데 싱가포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나에게 전해 주었다. 드러내지 않지만 아내이자 어머니 여성의 영향력은 시대를 떠나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전 한국에 방문했던 러시아 대표단과는 흥미로운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재로 한 대화를 실컷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TV 에서 늘 보는 러시아의 정세와는 사뭇 다른, 그저 이웃의 사람 사는 이야기다. 일이 끝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커다란 암체어에 앉아 티를 마시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엄지를 치켜들 때는 우리가 지구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다녀온 호주 출장에서는 웃음으로 가득 찬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좋은 날씨 탓인가, 푸르른 하늘 탓인가... 'We live in a dream'이라고 현지인들은 곧잘 말한다고 하는데 가족 중심적인 호주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큰 축에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같은 메시지다. 비즈니스의 순간에는 누구나 예민해 지지만, 가족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숨사탕을 든 소년 소녀처럼 천진난만 말랑말랑해지고 그곳의 중심에는 엄마의,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

나처럼 두 남매를 키우면서 계속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하며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무게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엄마는 늘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느라 안간힘을 쓴다. 우리가 밤이 되면 지구의 서쪽은 이제 깨어나 왕성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 지구는 둥그니까 24 시간 온라인 상태가 지속되고, 그 와중에 아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사회생활에 고단한 남편에게 안식을 줄 가정을 만드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니 머리 속은 늘 많은 숫자와 to do list로 인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는 웃음 띤 엄마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해 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의 바가지를 긁을 수가 없는 아내이다. 아이가 아파서, 혹은 병원에 입원해 간호를 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 다른 한 손으로는 컴퓨터로 일을 해내는 것도 내게는 일상적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줄다리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해 준 직장동료들 덕분이다. 덴마크 대사관 근무 시절에는 주 4 일근무로 유연함을 더했고, EU 상공회의소 시절에는 육아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최대한의 배려를 받았으며, 지금의 덴마크 기업인 험펠에서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최선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서로에 대한 탄탄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높아지는 편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국가를 만나며 느끼게 되는 나만의 일반화인지 모르겠다. 성차별, 갑을차별, 상하차별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희박해지고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내 경험치의 연구 결과로 보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내가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 북유럽의 문화가 이 사실을 수치적으로 또한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어느 순간 보니, 내 비즈니스 미팅의 테이블에는 여자들이 많이 사라졌다. 하나 둘 어디론가 들어가 버린 모양이다. 여전히 견뎌 내야 할 인간관계들이 존재하고, 존중과 신뢰의 수치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많이 높지 않다. 영화 ‘엘리제궁의 요리사’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을 위해 요리를 했던 여자 셰프의 스토리가 나온다. 남자들만 가득한 요리사의 세계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상황 속에 미테랑 대통령이라 보리 셰프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다.

“사람 때문에 힘들죠? 나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역경이 당신을 계속 살아가게 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맛이죠.”

행복한 사람은 막대기를 심어도 레몬 나무가 자란다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일 테다. 역경은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고, 가족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한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대표님과의 인연에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점은 그녀가 전업 주부로 가정을 지키며 지내다 공부를 병행하고 마침내 리더로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엄마의 리더십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확실히 특별한 강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자들 끼리 모이면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의 남아 있는 꿈 이야기, 혹은 계속 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서로 그것을 들어 줌으로써 자기 회복을 찾는다. 언젠가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다시 꿈꾼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존중과 신뢰. 행복을 가져다 주는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가정의 달 5월, 모두 행복한 봄 가정 되시기를..

Hempel Group Marketing Seoul,
Group MCO (Multinational Coordinator)

이정민 (Debbie Lee)

저자 '오픈 샌드위치, 북유럽식 행복 레시피'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 규정 개정
-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

2. 주요 개정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 등 심사기간 개정
- 서류심사 기산일을 "서류심사 위

탁한 날"에서 "서류심사 시작일"로 개정(제21조)

- 현장심사 기간을 기업심사 산정 방식에서 민원사무처리기간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심사 실정에 맞게 연장(제31조)

* (현행) "15일(공인기준만) 또는 20일(통관적법성 포함) 이내, 연장 10일 이내", 토·일 제외 → (개정) "현장심사 시작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이내, 연장 15일 이내", 토포함, 공휴일 제외

□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제41조)

-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기간 및 보완기간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단축(2개월→1개월)

3. 시행일자 : 2015년 4월 13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1]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 정비

[2]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 '15.1.1.부터 쌀 개방에 따라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제도* 운영

* (요지) 주요 통관지 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 지정

○ 가격신고서가 전산화면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규제개선 과제)

[3]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신고대상 운송주선인 명확화*

* Forwarder간 운송 재위탁시 신고대상 운송주선인을 과세가격(CIF)과 직결되는 운송주선인으로 함

○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개별소비세 부과됨에 따라 담배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 통관관리 강화

[4]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서류보관방법에 ERP시스템 등 전자보관매체 추가, 경정청구 기간 확대(3→5년), 직불카드 관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1→0.7%) 등 관세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환급결정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기재하도록 보완

3. 시행일자 : 2015년 3월 13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수입항에서 발생한 CIS (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비용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I. 쟁점

인천항은 과거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던 항구로, 공컨테이너의 수요가 공급에 비하여 부족하다. 이에 선사는 Empty Container Positioning 비용 부담으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수입화주가 선사에게 지불하는 CIS 비용이 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II. 결정

CIS 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임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운임 등의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사가 인천항 수입화물에 대하여 CIS 를 부과하는 것은, 인천항에서 수출화물보다 수입화물의 물량이 많아 국내 터미널 보관료, 공컨테이너 이송비용, 공컨테이너 임대료 등 Empty Container Positioning 비용증가가 주 원인이다. 이는 수입항 도착(본선하역준비완료)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다.

III. 당해 결정사항의 시사점

선사가 수입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명세서에서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신고시 이를 공제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다.

(1)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의 의미.

관세법 30 조 1 항 6 호에 따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운임·보험료와 기타운송관련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운임·보험료에 대해서는 지불주체와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계약한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50%의 국제운임을 부담하였다면, 수입자가 부담한 50%의 운임과 수출자가 부담한 50%의 운임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기타운송관련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 20 조 5 항). 따라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있을 경우, 운임인지 아니면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선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류할증료, 정기기항 이외의 항구양륙에 따른 할증요금은 운임에 해당하므로 수출자가 지불했던지, 수입자가 지불했던지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당해 결정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S 비용은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고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이지만,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본선하역준비완료"기준으로 과세/비과세 대상 (예시)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을 선·후로 하여 과세/비과세 대상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접안료, 입항료는 과세대상이지만, 수입항 도착 후 보세창고 장치비용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리고 수입항에서 화물의 특성상 부두접안이 불가하여 바지선으로 본선작업을 했을 경우, 바지선 이용료는

비과세대상이다. 그리고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시점과 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 사이의 선박대기 기간 동안 발생한 체선료는 비과세대상이다.

(3) 객관적 증빙자료의 준비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 이후의 운송관련 비용은, 운임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써 증빙되는 금액으로써 운송업자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어야 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美 무역대표부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1.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및 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주로 국가별 수입정책, 수출보조금 등의 무역장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토대로 향후 우선협상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선정과 통상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매년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큰 많은 국가들의 이목을 받아왔다.

한국의 對 미국 수출입실적

(2014년 기준 / 금액단위 : USD 1,000)

분류	對미국	전체	비중	순위
수출금액	70,284,872	572,664,607	12%	2위
수입금액	45,283,254	525,514,506	9%	3위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미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對 한국 농산 수출품의 2/3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작년 對 타국 농산물 수출 성장률보다 7배 높은 31.2%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또한, 미국 회사들이 금융, 통신 및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USTR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주요 내용

기술 무역장벽	- 화평법 발표에 따른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해야
	-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 우려 표명 -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위생검역	- 미국산 가공류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하다
	- 정부조달 관련 불투명한 의검수령 절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중단에 대한 우려 표명
일반 무역장벽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 우려 - 중소기업 적합직종에 패밀리레스토랑이 포함되는 등 미국 업체에 제약

출처 : 美USTR '화평법' 3년째 무역장벽으로 지목, 매일경제 2015-04-22

미국의 對 한국 농산물 수출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과 관련하여 금번 보고서에서 포함된 유기농 제품 인증,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 합의사항 이행 및 쌀 개방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장벽(TBT) - 유기농 제품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2014 년 7 월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양국의 유기농 제품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은 향후 협의를 통해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품을 농산품 및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2) 위생검역(SPS)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양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30 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현재까지 무리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2014 년 기준 총 8 억 4,740 만 달러 규모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39.1%가 증가한 액수이며, 한국은 다섯 번째로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 됐다고 평가하였다.

3) 수입정책 - 쌀

쌀에 대한 한국의 최소시장접근(MMA)합의가 2014

년 말에 종료되면서,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최소시장접근(MAA) 약정만료 이후에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3. 향후 예상

올해 미국 무역장벽보고서가 예년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중인 12 개국은 협정 타결 기한을 올해로 목표하였으며,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회의적인 자국의 의원들 및 노조 등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특정 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국은 한국과 통상 접촉 때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조건으로 자동차와 제약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렇듯 미국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승인에 있어서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대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특별 기고

신한관세법인 창립 50주년에 붙여.

유쾌한 모임이었다. 부담없이 참석해서 환담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신한관세법인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며 장흥진(張興鎭)회장이 오직 한길에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자리였다.

장회장과는 매 주말에 만나 함께 운동을 하는 허물없는 동갑내기다.

기념식에서 특히 감명 받은 것은 장회장의 고매한 인격이 곳곳에 녹아 있었으며 힘차게 사가를 부르는 모습은 그의 자긍심을 자리를 함께 한 이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하였다.

장회장은 독실한 불자(佛子)일뿐 아니라 군자(君子)이다. 군자의 품성을 그대로 다 갖추어 있다. 고객에게는 성심을 다해 봉사하여 초기에 인연이 된 고객이 여전히 더 큰 고객으로 이어져 감사의 뜻을 표했고, 30여 년의 장기근속자에게 표창도 있었는데 작은 조직에서 그런 장기근속자가 있다는 것에서도 장회장의 인품을 알 수 있었다. 군자의 도인 화광동진(和光同塵: 자기의 뛰어난 才德(재덕)을 나타내지 않고 世俗(세속)을 따른다는 뜻)의 행적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 30년 근속에 노모를 극진히 봉양한 분에게 특히 효행의 뜻을 담아 표창했는데 이 또한 효제사상(孝悌思想)을 존중한 장회장의 세심한 배려로 보기 좋았다.

전문직에 있어서 가업을 이어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더러 있는 일이지마는 관세업무는 특히 특수한 전문분야인데 따님이 아버지의 필생의 노력을 이어받아 잘 진흥시키고 있다니 참으로 존경스럽다. 중국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선사(臨濟禪師)가 남긴 명언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서든 주인 같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라 함을 말함)을 장회장 부녀를 비롯 신한관세법인의 모든 임직원에게 드리고 싶다.

먼 훗날 성대한 100주년 기념식전에 따님인 장승희 회장이 단상에서 힘차게 사가를 부르는 모습을 그려 보는 것 또한 즐거움이 아닌가.

2015. 3. 22.

공인회계사 이기화.



이 기 화 공인회계사

PROFILE

- 前 SBS 상임감사
- 前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경원대학교 감사 역임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